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6. 6.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규정을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하고 심의대상 확대 (안 제 2조)
-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수당과 여비 규정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 (2015.11.19.시행)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 제5조의2)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1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정

나.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하고 심의사항 개정(안 제2조)

-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변경

다. 위원회의 위원 일부 개정(안 제3조 제③항)

-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대표”로 변경하고 “보건의료관련전문가”를 “학교보건 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변경

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바. 회의소집 규정 개정(안 제6조 제①항)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로 개정

사.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개정(안 제11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 평가 : 평가의견 반영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5. 4 ~ 5.24, 20일간)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주민 대표
4. 학교보건 관계자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u>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20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b>제2조(기능)</b>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li> <li>2. <u>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u></li> <li>3.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u></li> <li>4. 그 밖에 <u>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p><b>제3조(구성)</b> ① -----          ---1명 ----- 20명 이내의-----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전문가
5. 관계공무원

<신설>

<신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1. -----
2. 지역주민 대표
3. -----
4. 학교보건 관계자
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6. 관계공무원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전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